

統一情勢分析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2003. 6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요 약>

1. 일본의 유사법제의 주요 내용

가. 「무력공격사태법안」

- 유사법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자위대의 출동요건인 ‘무력사태’의 정의를 ‘무력공격 발생·임박사태’ 및 ‘무력공격 예측사태로 규정
 - 전쟁수행에 필요한 동원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민주당이 민영방송국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및 국민보호 규정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해
 - ‘보도표현의 자유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 유사시 국민 피난조치 등 국민보호법제의 1년내 정비를 포함하여 테러게릴라 대책관련법, 미군행동관련법 등 향후 정비할 유사법제도 적시

나. 「자위대법 개정안」

- 방위출동 명령 ‘발동후’에만 허용되는 자위대의 진지구축·무기용토지·식량 강제수용 등을 방위출동 명령이 ‘예상’될 경우에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 자위대의 방위출동 시, 부대이동·토지이용·위생의료 등 군사행동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로·하천·산림법 등 20여개의 일반법에 자위대의 행동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특수조항을 신설함.

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 안보회의(총리 등 각료 8명 참석)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안보회의 산하에 평상시부터 위기관리 대책을 연구·제언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함.

2. 평가

○ 일본과 주변지역 유사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음.

○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은 유사시 총리에 권한을 집중시킴과 더불어 신속한 대응체제의 구축을 도모하면서 자위대의 원활한 군사활동을 위해 개인 재산권의 침해 등 기본권 제한도 가능케 한 점이 특징임.

○ 이와 같은 유사법제의 정비는 여타 안보관련 법·제도 정비의 추진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전후 안보논의의 새로운 단계로 가는 전환점
- 보통국가(normal state)를 지향한 안보관련 법·제도 정비

3. 정책적 고려 사항

○ 유사법제가 9·11테러 미국테러사건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일동맹의 강화 및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유도, 유엔 안보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지향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 등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냉철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방위청의 성(省) 승격, 테러·괴선박 대책관련법 등 후속 유사법제의 정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위한 헌법 해석변경 추구

○ 한국은 21세기 전략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국가전략 및 안보전략,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일동맹, 미국의 대일본전략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긍·부정적 파급영향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 감정적 차원의 배일을 배제하고 지일 → 용일을 지향하는 전략적 마이드와 함께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일본전략 전개
- 한·일간의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보협력대화의 중층적 제

도화

-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를 위한 대아시아 외교 강화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일본의 유사법제 제정 배경	2
1.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강화	2
2. 일본 정치공간의 보수화	5
III. 유사법제 제정의 추진 경위	8
1. 1970년대 후반의 연구·검토의 착수와 무산	8
2. 일본 유사법제 정비의 재차 부각	8
3.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과 급진전	9
IV. 유사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	11
1. 주요 내용	11
2. 평가	14
V. 정책적 고려 사항	15

I. 문제제기

- 전후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는 일본국민들의 반전 정서를 바탕으로 한 야권의 ‘전쟁동원체제 부활’ 비난에 부딪쳐 무산되어 왔으나, 고이즈미 내각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이루어졌음.
 - 고이즈미 내각은 2002년도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일본은 3개의 유사법안을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첫날에 참의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외교적 폭거’,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고, 동아시아 주변국들로부터는 경고, 경계의 비판을 받아야 했음.

- 그러나, 전후 논의조차 금기시되었던 일본의 유사법제의 정비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안보위기의식 속에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 수행,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의 전략적 목적을 지향하여 성립된 것에 유의해야 함.
 - 이는 향후 후속 유사법제의 정비 등 안보관련 법안의 개혁을 시사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일본 유사법제 제정의 배경, 추진 경위, 3개 법안의 주요 내용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고려사항을 강구함.

II. 일본의 유사법제 제정 배경

1.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강화

○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미·일 관계는 경제분야뿐 아니라 안보분야에서도 우려되는 견해나 의견들에 직면하게 되고, 게다가, 19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병사의 일본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반(反)주일미군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됨.

-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무용론’과 ‘오키나와 기지 철수요구’ 견해 제기,
- 무라야마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가 작성한 정책보고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 방식 - 21세기를 향한 전망』(1994.8)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보다 UN을 더욱 중시

○ 따라서, 미·일 양국에서는 미·일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확고하게 재정립 또는 재확인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됨.

- 미국 국방부는 1995년 2월에 조세프 S. 나이(Joseph S. Nye, Jr.)가 주도하여 작성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1995)¹⁾의 발표를 통하여 미·일 파트너십(partnership) 및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

- 일본 정부는 동년 11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1996년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이하, 「신방위계획의 대강」이라 칭함)²⁾에서 일본 및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필요 불가결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 및 기능적 유효성의 향상 등을 강조

○ 이와 같은 미·일 양국의 정책표명은 양국 수뇌를 통하여 재차 나타났음.

- 1996년 4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는 동경 정상회담에서 탈냉전시대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이라고 규정하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을 천명하는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³⁾(이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이라 약칭함)을 발표

1)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2) 「平成8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1995. 11).

3) "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의 전문(全文)은 Mike M.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에 게재된 것을 참조.

-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함께 확대·발전되고, 미·일 동맹은 ‘21 세기의 지도력 분담(power-sharing)’⁴⁾을 지향하여 강화됨.
- 미·일 동맹의 강화는 미국 부시 정권의 출범과 일본 고이즈미 연립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전략 등으로 한층 강조되고 있고, 미·일동맹의 강화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및 자위대의 해외활동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
 -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 작성됨에 따라 미·일 양국의 협력범위는 기존의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 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는 미국의 테러전 지원과 더불어 중동, 인도양으로까지 확대

4)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2000. 10). 동 보고서는 미국 국방대학(NDU)이 포스트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2001.1)에 대비하여 구성한 초당적 연구그룹에 의해 작성되었다. 초당적 연구그룹에는 공화·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방차관보를 역임한 Richard L. Amitage(1983~86), Joseph S. Nye(1994~95)를 비롯하여 CRF의 Michael J. Green 연구원 등 총 16명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따라서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Amitage Report)라고도 불리고 있다.

2. 일본 정치공간의 보수화

가. 정치변동과 정치공간의 보수화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정치는 전후 38년간 집권해 온 자민당의 제도적 피로 및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 노출과 진통을 겪게 됨.

- 1993년의 7·18 총선 직후 자민당 정권의 붕괴
- 정계개편 및 연립정권

○정치변동에 따른 연립정권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본정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나타냄.

-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들의 국정참여에 따른 여당화는 일본의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우경화 성향으로 변모
- 사회당의 침하와 더불어 일본의 정치구도는 ‘보수 대 혁신’의 구도에서 ‘보수 대 보수’의 구도로 전환하게 되고, 사회당은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
- ‘전후교육’을 받은 쇼와(昭和)세대가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

나. 국가개혁을 위한 국정기반 강화와 보수대연합

○1993년 7·18 총선 이후 일본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신보수 세력은 3년 3개월만의 자민당 정권의 부활과 더불어 ‘21세기 정

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국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 그와 같은 국가개혁의 추진을 위한 권력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정계개편의 단행과 더불어 보수대연합화가 추구됨.

○즉, 자민당 단독집권의 부활을 실현시킨 하시모토 총리는 내각출범과 함께 21세기에 대비하는 '개혁과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국가경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6대 국가개혁을 발표하고, 국가개혁 작업에 착수함.

○하시모토 내각의 국가개혁 작업은 뒤를 이은 오부치 내각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오부치 게이쥔 총리는 낮은 국민 지지도, 참의원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집권기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장악하기 위해 보수대연합을 추진하여 마침내 1999년 10월 5일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을 구성하게 됨.

- 자민·자유·공명 3당의 연립정권은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최초로 중의원 70%(348/500석), 참의원 50%(141/252석) 이상을 장악한 거대정권

다.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등장과 정치공간의 보수화 촉진

○모리 총리가 '천황중심의 신국', '피랍 일본인의 제3국 발견' 등

짚은 실언에 따른 ‘총리 자질론’ 문제에 대한 국민비판,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임한 후, 개혁을 기치로 내건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선거돌풍을 일으키며 총리로 등장함.

- 고이즈미 총리는 높은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지지기반의 확대와 ‘임기 5개월의 잠정정권’의 한계 타파를 도모하기 위해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사회 전 분야의 구조개혁 및 신보수 정치노선을 강하게 주창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의 리더십’ 발휘를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 그와 같은 개혁정치의 전개속에서 일본의 정치공간은 신보수화 성향을 한층 강하게 나타냄.

- 일본정치의 보수화 경향 축진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위협 인식의 증대, 9·11 미국 테러사건, 동지나해 부근 피선박 격침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안보위기 의식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안보정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자위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력의 질적 증강 및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

Ⅲ. 유사법제 제정의 추진 경위

1. 1970년대 후반의 연구·검토의 착수와 무산

○1970년대 후반 미·일 군사협력이 질적, 양적으로 강화되면서 「미·일 방위협력지침」(1978.11)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1977년 후쿠다 내각에서는 방위청 주관아래 연구·검토에 착수하게 됨.

○그러나, 야권이 ‘전시동원체제’라고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입법화는 지연되고 사실상 무산됨.

2. 일본 유사법제 정비의 재차 부각

○「미·일 방위협력지침」(1997.9)의 제정과 더불어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대내외적 활동 강화 및 미·일동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안의 정비를 추진하게 됨.

- 현실적으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 실제상황에서 시행되려면 ‘자위대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법’, ‘해상보안청법’, ‘항만법’, ‘항공법’ 등 최소한 20여개의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필요

○‘자민-자유 2당’ 연립정부는 야당 공명당과의 정책연대아래 ‘북한

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 및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대북한 위협인식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분위기를 활용하여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즉,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안’을 1999년 5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성립시켰고,

- ‘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부는 2000년 10월 30일에는 ‘주변사태법’에서 삭제된 ‘선박조사 활동법’을 성립시킴.

○이처럼,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자위대 활동을 보장하는 법제가 정비되는 가운데 ‘일본 유사시’에 대비한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강조됨.

- 2000년 4월 모리 요시히로 前 총리는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유사법제의 입법화의 의지를 천명,
- 『1999~2002年度 防衛白書』에서 유사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3.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과 급진전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정치공간의 보수화, 보수대연합에 의해 강화된 국정운영능력 및 권력기반의 강화, 국민들의 안보위기 의식 증대 등의 전략적 활용을 꾀하면서 일본 유사시에 대비한 법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2001년 5월 내각관방 산하에 유사법제팀을 구성하고 작업진행

○ 고이즈미 연립내각은 2002년 4월 16일 각료회의에서 「무력공격 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의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결정하였고, 4월 17일 국회에 일괄적으로 제출함.

○ 그러나, 국회논의 과정에서 이 3개의 법안은 야권의 반발로 심의가 공전되면서 ‘2003년 정기국회(1.20~6.18)’로 이월됨.

- 유사법제 정의가 모호해 정부의 자의적 해석 우려
- 긴급사태시 국민의 강제협력 의무만을 명시한 채 국민보호 관련 법제 누락이 이유

○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 정기국회(1.20~6.18)에서 3개의 법안의 성립을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정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개발문제로 고조된 국민들의 안보 위기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대야권 설득에 주력함.

- 그 결과, 금년 5.15 중의원 본회의, 6.6 참의원 통과

IV. 유사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주요 내용

가. 「무력공격사태법안」

- 유사법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자위대의 출동요건인 ‘무력사태’의 정의를 ‘무력공격 발생·임박 사태’ 및 ‘무력공격 예측사태’로 규정함.
- 전쟁수행에 필요한 동원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유사시 방위소집 등 대응방침 마련,
 - 대책본부 설치,
 - 총리의 지방자치체·공공기관에 대한 명령권 등 국민협력 의무 강제
- 민주당이 민영방송국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및 국민보호 규정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해
 - ‘보도표현의 자유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 유사시 국민 피난조치 등 국민보호법제의 1년내 정비를 포함하여 테러게릴라 대책관련법, 미군행동관련법 등 향후 정비할 유사법제도 적시

나. 「자위대법 개정안」

- 방위출동 명령 ‘발동후’에만 허용되는 자위대의 진지구축·무기사용, 토지·식량 강제수용 등을 방위출동 명령이 ‘예상’될 경우에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 자위대의 방위출동 시, 부대이동·토지이용·위생의료 등 군사행동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로·하천·산림법 등 20여개의 일반법에 자위대의 행동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특수조항을 신설함.

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 안보기구로서의 안보회의(총리 등 각료 8명 참석)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회의 산하에 평상시부터 위기관리 대책을 연구·제언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함.

<표> 有事法制 관련 3개 법안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武力攻撃事態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법제의 기본 방향 제시 ○ 무력사태의 범위를 자위대 방위출동 요건인 “무력공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넘어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사태”로까지 확대 ○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해 지자체 및 방송국 등 공공기관에 대한 총리의 지시권 부여 및 국민의 협력의무 적시 ○ 유사시 국민 피난조치 등 국민보호법제의 1년내 정비를 포함하여 테러·게릴라 대책관련법, 미군행동관련법 등 향후 정비할 유사법제도 적시
자위대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출동 명령(76조)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자위대의 사전 진지구축 및 무력사용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토지·식량 등의 강제 수용 가능 ○ 자위대의 방위출동 시, 부대이동·토지이용·위생의료 등 군사행동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로·하천·산림법 등 20여개의 일반법에 자위대의 행동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특수조항을 신설함.
안보회의 설치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회의의 산하에 「전문위원회」(위원장:관방장관)를 신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부터 위기관리 대책을 연구

2. 평가

- 일본은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주변사태법」의 제정(1999.5)에 이어 ‘일본 유사시’에 대비하는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 일본과 주변지역 유사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음.

-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은 유사시 총리에 권한을 집중시킴과 더불어 신속한 대응체제의 구축을 도모하면서 자위대의 원활한 군사활동을 위해 개인 재산권의 침해 등 기본권 제한도 가능케 한 점이 특징임.

- 이와 같은 유사법제의 정비는 방위청의 성(省) 승격, 테러·괴선박 대책관련법 등 후속 유사법제의 정비, 미·일동맹의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 등 여타 안보관련 법·제도 정비의 추진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전후 안보논의의 새로운 단계로 가는 전환점
 - 보통국가(normal state)를 지향한 안보관련 법·제도 정비

V. 정책적 고려 사항

- 한국, 중국 등 동북아 주변 국가들은 유사법제의 제정을 계기로 자위대에 적용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폐기될 것을 우려하여 유사법제의 제정에 대해 경계·비판하는 견해를 나타내었고,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도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국회연설(6.9)을 통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 표명
 -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은 전수방위에 전념하는 방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
 - 북한은 내각기관지 『민주조선』(5.14)을 통하여 “반동들의 해외 팽창 전략”이라고 비난

- 그러나, 유사법제가 9·11 미국 테러사건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일동맹의 강화 및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유도, 유엔 안보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지향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 등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냉철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방위청의 성(省) 승격, 테러·괴선박 대책관련법 등 후속 유사법제의 정비,
 -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위한 헌법 해석변경 추구

- 한국은 21세기 전략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국가전략 및 안보전략,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일동맹, 미국의 대일본전략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긍·부정적 파급영향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 감정적 차원의 배일을 배제하고 지일 → 용일을 지향하는 전략적 마이드와 함께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일본전략 전개
 -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를 위한 대아시아 외교 강화

- 한·일간에는 과거사로 인하여 안보차원의 신뢰관계가 그다지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한·일간의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보협력 대화의 중층적 제도화를 추구함.
 - 북한 및 한반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의 전략환경 등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대응책 모색 등과 관련하여 ① 수뇌급: 각료급 수준의 고위급, 군수뇌급, ② 실·국장 수준의 안보정책 관료 실무급, 군 야전 지휘관 수준의 실무급, ③ 안보정책 연구기관의 전문가급, ④ 관련 시민단체 수준의 포럼 등 한·일 안보협력 대화의 장을 다양하게 운영

- ‘미·일 대 중’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간의 안보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포럼·세미나 등의 개최, 정보교환, 인적 교류의 활성화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대화가 제도적으로 운영되도록 안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함.

- 한·미, 한·중, 한·러 양자간 안보협력대화 및 한·중·일, 한·미·일, 한·미·일·중·러 등 다자간 안보협력대화 적극적 전개